

1. 개정이유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20063호 2024. 1. 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미반환우편물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복지우편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를 추가, 서신송달업자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복지우편 서비스의 용어 정의 및 이용조건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3호 및 제70조의18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 나. 우정-민간의 제휴를 통한 우수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4호 및 제70조의19 신설, 별표 3)
- 다.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항)
- 라. 광고우편엽서 상품 폐지에 따라 관련 단서 삭제(안 제76조의2제1항)
- 마. 감액대상 우편물의 종류에 국회 의정활동보고서가 제외됨('23.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85조제1호마목)
- 바. 우편법이 개정('24. 7. 24.시행)됨에 따라 반환·미반환 우편물 종류 신

설(안 제112조의2)

사. '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145조제1항)

아. 서신송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을 개정(안 제145조)

자.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추가 (안 별표 3)

차.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추가 (안 별표 4)

카. 권익위 권고사항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 2. 22. 자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명확화 (안 별표 6)

타.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서식에 지역명 현행화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우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복지우편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응답을 필요로하는 사항을 받아 그 결과를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자적형태 등으로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국내외 우편사업자, 물류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과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교환하는 제도

제49조제1항 중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를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70조의18 및 제70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제112조의2의 제목 “(반환거절의 표시)”를 “(반환거절의 의사 표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제2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이 되는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을 별납하는 통상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편요금을 후납하는 통상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북 지 등 기	○	○
---------	---	---

국 제 우 편 연 계 서 비 스	○	○
-------------------	---	---

별표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북 지 등 기	○		○							
---------	---	--	---	--	--	--	--	--	--	--

별표 6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를 “그 처분 후 다시”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뒤쪽 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설></u>	23. <u>복지우편</u> <u>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응답을 필요로하는 사항을 받아 그 결과를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자적형태 등으로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u>
<u><신설></u>	24. <u>국제우편 연계 서비스</u> <u>국내외 우편사업자, 물류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과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교환하는 제도</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 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 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 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① 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우편엽서는 정가와 함께 판매가를 표시하여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그 할인금액은 정가의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

-----.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① -----

----- . <단서 삭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우정
사업본부장이 미리 정하여 고시
한다.

②·③ (생략)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
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
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
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우편물

가. ~ 라. (생략)

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
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
위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
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
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바. ~ 아. (생략)

2. (생략)

제112조의2(반환거절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
물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발송시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
편물)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 사. (현행 바목부터 아
목까지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반환거절의 의사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 -----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1조
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
경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
물(제2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선택적 우
편역무의 대상이 되는 통상우편
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
요금을 별납하는 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
편요금을 후납하는 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
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
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이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행
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4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한다.</u>
--	-------------------